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96 발의연월일: 2024. 11. 4.

발 의 자: 박선원·김병주·김민석

이기헌 • 안규백 • 박지원

부승찬 • 황 희 • 박범계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계엄 선포 요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실제로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는 현행법 조항을 계엄 선포의 근거로 활용한 바 있음.

프랑스·독일·미국·영국 등은, 계엄을 선포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계엄법」을 자 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계엄권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임.

이에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이전 국회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 선포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인준을 받 도록 하는 이중 장치를 마련하여 국회의 계엄 동의 절차를 확실히 하고자 하며,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나 관련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현행범 체포를 이유로 계엄 동의 권한이 박탈되지 않도록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제11조제4항 신설 등).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계엄 선포의 통고)"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및 통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4항으 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 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 다.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신	제4조(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
<u>설></u>	의 및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
	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u>①</u>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u><신 설></u>	③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때
	로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u>한다.</u>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	
구하여야 한다.	<u>.</u>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
	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

<u>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u> <u>야 한다.</u>